

보조금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하반기 청렴도관련 보조금 특정감사 —

2022. 12.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사업수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 ○●○○○○○ ○●○○○ ○●○○○ ○●○○○ △△△△ △△△ △△을 위하여 [표1]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 □□□□□□ ○●○○○○○ ○●○○○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비			주요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 또는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용역계약을 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가 [표2]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도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명령을 하지 않는 등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 점검을 하지 않았다.

**【표2】 △△△△△△△△△△△△△△△△ 부적정 용역계약 현황**

보조사업명	용역명	계약금 (천원)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비고
□□□□□□ □□□□□ □●●●●	□□□□□ □●●●●●	□□□□□	△△△△△	1인 수의계약	

※ ○○○○○○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대행사업자를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사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 □□ △ △△ △△△ △△을 위하여 [표1]과 같이 □ □□□□□□□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 □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교부결정일)	보조사업비 (도비 100%)	사업 내용	비고
□ □□□□□□□	○○○○○ ○○○○ ○○○○○○○	2021.□.□.~□. (2021.□.□.)	□□□□	□□□□ □ □□ □□□□ □□, ○○○ ○○○○ ○	도 계획수립 2021.□.□. 교부신청일 202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보조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전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 사용승인 조치를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후 보조사업자가 사업 시행일에 임박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 △△ △△△△을 위한 강의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될 것이 예상됨에도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사업 시행에 대한 승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표2]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사업을 시행하였고,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보조금액을 정산·확정하였다.

**【표 2】 △△△△ △△ 강의 내역**

강의일자	내역	강의장소	지출금액(원)	비고
합계			○○,○○○	
2021.□.□.	강의(△△△△ △△)	○○○○ ○○○○○	○○,○○○	부적정
2021.□.□.	강의(△△△△ △△)	○○○○ ○○○○○	○○,○○○	

※ ○○○○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중단 및 내용변경 승인절차 미실시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을 위하여 [표1]과 같이  
 △△△△△ △△△ △△△△△△△ △△ △△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1】 △△△△△ △△△ △△△△△△△ △△ △△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교부결정일	보조사업비			사업 내용	비고
			계	도비	자부담		
계			□□□□□	□□□□□	□		
△△△△△ △△△ △△△△△△△ △△ △△	●●●●●●●●●● ●●●●●●●●	2021.□.□.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제작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 □□ □□ □□□□□ □□□□□ ●● ●●●  
 ●● ●●●●● ●●●●를 위하여 [표 1]과 같이 □□□□□ □□ □□□□□  
 □□□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  
 른 세부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  
 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1년 □□□□□□□□ □□ 시행지침」에는 △△△△△△△△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인 용역·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제작 계약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진행토록 하여야 하고, 임의로 추정가격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에서 □□□□□□ □□사업 중 세부사업인 △△△△ △△△△ △△ △△을 위하여 ◆◆◆ ◆◆◆ ◆◆◆을 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총 □□,□□□천원의 △△△ △△ 관련 사업비를 3회에 걸쳐 건당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의 지방계약법 준수 관련 지도·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할 계약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표 2】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집행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내용	비고
계			□□□□	3건	
△△△△ △△△△ △△	□.□	●●●●●● (●●●)	□□□□	-□□ □□ □□ □□ □□ □□ □□ -□□□□ □,□□□□, □□□□ □,□□□□	1인 수의계약
	□.□	□□□□ (□□□)	□□□□	-△△ △△ △△△ △△△△△ △△ -△△△△ △,△△△△, △△△△△ △,△△△△	1인 수의계약
	□.□	■□■□■□ (■□■)	□□□□	-○○ ○○○○ ○○○○○○ ○○○ ○○○○ ○○ -○○○○ ○,○○○○, ○○○○○ ○,○○○○	1인 수의계약

※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소에서는 □□□□□□ □□ □□□□ □□□□ △△△△△△△△ △△△△△△△△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 ○○○○○○ ○○○○○○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1】 사업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 업 비				주요 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보조금 사용 방식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시행 2020.3.30.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지출 시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하거나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했다.

그런데 □□□□□□□□□□소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 전용계좌가 아닌 자체 수입 및 지출에 사용하던 자체계좌를 이용하여 사업비를 선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사업비 전액을 자체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운영하거나(●●●●●),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보조사업자 자체계좌로 먼저 이체 후 인건비, 관리비 및 부품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지 않아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아무런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

**【표 2】 보조금 전용계좌 이체 현황(보조금 전용 계좌)**

(●●●●●)

(단위 : 원)

거래일시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잔액	적요(거래내용)	비고
2021-□-□	□□□□□□	-	0	●●●●(●●●●●)	교부결정전 잔액 0원 처리
2021-□-□	-	□□□□□□□□	□□□□□□□□	□□□□□□□□	보조금 교부(2021.□.□.)
⋮				⋮	
2022-□-□	□□□□□□□□	-	□□□□□	●●●	정산확정 통보(2021.□.□.) 후 일괄이체

※ □□□□□□□□□□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단위 : 원)

거래일시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잔액	적요(거래내용)	비고
2020-□-□	□□□□	-	□	△△△	전년도말 잔액 0원 처리
2021-□-□	-	□□□□□□□□	□□□□□□□□	■□■□■□■□■□	보조금 교부(2021.□.□.)
2021-□-□	□□□□□□□□	-	□□□□□□□□	△△△(△△△△)	보조사업자 기본 운영계좌로 이체
2021-□-□	□□□□□□□□	-	□□□□□□□□	△△△(△△△△)	보조사업자 기본 운영계좌로 이체
2021-□-□	-	□□□□	□□□□□□□□	□□□□	
2021-□-□	□□□□□□□□	-	□□□□□□□□	△△△(△△△△)	보조사업자 기본 운영계좌로 이체
2021-□-□	□□□□□□□□	-	□□□□□□□□	△△△(△△△△)	보조사업자 기본 운영계좌로 이체
2021-□-□	□□□□□□□□	-	□□□□□□□□	△△△(△△△△)	보조사업자 기본 운영계좌로 이체
2021-□-□	□□□□□□□□	-	□□□□	△△△(△△△△)	보조사업자 기본 운영계좌로 이체
2021-□-□	-	□□□□	□□□□□□□□	□□□□	

※ ■□■□■□■□■□■□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조치할 사항 ■□■□■□■□■□■□소장은

앞으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